

증거 신청 및 준비 서면

사건 2006고단2459 명예훼손(서울지법 단독 8부, 조귀장 판사)
피고 김명호,

위 명예훼손에 관하여(이하 '이사건'), 아래 대법원 판례들과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증거신청 합니다.

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판시사항]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판결요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 소정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

[판결요지]

형법 제307조 제2항이 정하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

하기 위하여는 범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며,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도2186 판결

[판시사항]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나. ‘가’항의 **허위인식에 대한 입증책임**

[판결요지]

가.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그 적시하는 사실이 허위이어야 할 뿐 아니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을 하여야만 된다 할 것이고, 만일 범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죄로서 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309조 제2항의 죄로서는 벌할 수 없다.**

나. ‘가’항의 허위의 점에 대한 인식, 즉 **범의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검사측은 공소사실에서 피고인의 죄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공소사실 입증을 위하여, 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첫째: 피고인의 피켓 구호가 **허위임을 입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둘째: 그 피켓구호가 허위임을 피고가 인식하였음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두 핵심 사항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검사측은 제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입증자료1: 열람신청 2006. 7. 12.), 7월 4일 피고인이 수령한, 검사측의 증거목록에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형사소송법 제 307조 (증거재판주의)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의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검사측은 위 형사소송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규칙

제133조 (증거신청의 순서)

“증거신청은 검사가 먼저 이를 한 후 다음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를 한다.”

과 소송 경제상 효율을 위하여, 피고인이 검사측의 증거에 대한 반박 및 그를 입증하는 증거들을 공판기일(8월 17일)내에 제출할 수 있도록, 검사측에 증거 및 그의 설명자료 제출을 명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 12일

위 피고인 김명호

입증 자료

1.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서(2006. 7. 12.)

<http://geocities.com/henrythegreatgod/hyungsa.htm>

서울 중앙지법 단독 8부 귀중